

2024년도 고흥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2024년도 고흥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필기 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고흥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4. 3. 3.(일) ※ 직렬별 시험시간 상이

- [보건직렬]: 오전 09시 ~ 10시(60분)

- [시설직렬]: 오전 11시 ~ 12시(60분)

나. 시험장소: 고흥군청 우주홀(1층)

- 주 소: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2. 서류전형 합격 및 필기시험 대상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9급	시설	일반토목	8명	14명	A101, A102, A103, A104, A105, A106, A107, A108, A109, A110, A111, A112, A113, A114
		건축	4명	6명	B101, B102, B103, B104, B105, B106
	보건	보건	3명	40명	C101, C102, C103, C104, C105, C106, C107, C108, C109, C110, C111, C112, C113, C114, C115, C116, C117, C118, C119, C120, C121, C122, C123, C124, C125, C126, C127, C128, C129, C130, C131, C132, C133, C134, C135, C136, C137, C138, C139

3. 응시자 준수사항

- 가.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 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 지참
-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과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함
- 라.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하여야 하며, 수험생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로만 답안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단 표기한 부분을 긁는 행위나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 금지**)
-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하지 말 것
-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마.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등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사.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각 고지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스마트워치,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
-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자.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핸드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차.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이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카.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바로 회수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문제지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타.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기재(또는 표기)하지 않으면 “0” 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응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5.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 가. 필기시험 합격자는 2024. 3. 4.(월) 고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나.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발표 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 각각 고흥군청 행정과(☎ 061-830-523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